주식회사 아토 원가관리 및 사업부손익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 용역계약서

2005. 12.

주 식 회 사 아 토 한 영 회 계 법 인

## 원가관리 및 사업부손익관리시스템 개선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아토(이하 "갑"이라 칭함)과 한영회계법인(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의 원가관리 및 사업부손익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을'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원가관리체계와 사업부손익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을"의 진단 및 개선용역에 대하여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기 작성하여 "갑"에게 전달한 「원가관리 및 사업부손익관리시스템 개선용역 제안서」(이하 "제 안서")에 기술한 내용으로 하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 는 것으로 한다.

- 1) 원가시스템 개선
- 원가비목에 대한 분석을 통한 관리수준 결정
- 원가비목에 대한 행태분석으로 적합한 배부기준 재검토
- 원부자재 분석을 통한 관리수준 검토
- Cost Center 설정 검토와 개선
- ERP 상 공정별원가시스템 개선(삼성 SDS 와 협업 분야)
- 2) 사업부제손익 산출 개선
- 사업부제 관리를 위한 손익개념의 정립
- 사업부 개별원가 구분과 공통원가 배부기준 검토
- ERP 상 사업부 손익관리시스템 개선(삼성 SDS 와 협업 분야)
- 3)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구축(삼성 SDS 와 협업 분야)
- Project 별 진척률 관리를 위한 Guide 설정
- 4) 실제원가계산 Data 의 검증작업 실시
- 재고실사와 재물실사 회사와 공동 실시
- 원가계산 및 사업부손익관리시스템개선작업 이후 실제 산출된 Data 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

## 제 3 조 (용역의 추가 및 범위의 확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용역의 범위에 추가되는 새로운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상기 용역의 목적 내지 범위에 대한 쌍방의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합리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추가되는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 제 4 조 (용역 기간)

"을"의 용역의 기간은 2005 년 12 월 일부터 2006 년 4 월 일까지 16 주간으로 하되, 각 주별 용역 수행일수는 "을"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른다.

#### 제 5 조 (용역 보수)

- (1) "갑"에 대하여 "을"이 제공하는 상기 용역에 대한 용역보수는 금 이억 원정(W2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갑"은 동 금액을 아래 와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 계약 후 청구일로부터 1 주일 이내(30%): 육천만원정(W60,000,000)
    - 용역 착수후 30 일째 되는 날 이후 청구일로부터 1 주일 이내 (30%): 육천만원정(W60,000,000)
    - 최종보고내용에 대한 "갑"의 승인일 이후 청구일로부터 1주일 이 내(40%): 팔천만원정(W80,000,000)
- (2) 상기 용역보수는 용역 관련 보고서 인쇄비와 출장교통비, 식대 및 숙박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실비기준으로 별도 청구한다.
- (3) 제 2 조에 의한 "원가계산 및 사업부손익관리시스템개선작업 이후 실제 산출된 2006년 1/4분기 Data에 대한 검증작업 실시"결과 정합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는 상기 용역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제 6 조 (최종산출물의 제출)

"을"은 용역 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최종보고를 한 후 2 주일 이내에 최종산출물 1 부(국문)를 제본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 제 7 조 (상호 업무 협조)

- (1) "을"은 면담일정 등 용역의 진행과정 및 계획에 대하여 "갑"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갑"은 용역기간중 "을"의 집무에 적합한 장소와 집기·비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 제 8 조 (계약 내용의 변경)

"갑"과 "을"이 동 용역 개시 후 제 3 조의 조항 이외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 9 조 (책임의 제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의 "갑"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며, "을"은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계약 해지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① "갑"의 사유로 인하여 "을"의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③ 국가 비상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 제 10 조 (계약의 해지 및 분쟁의 조정)

- (1) 계약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갑"은 그 때까지 "을"이 투입한 시간 중 용역지원 보수가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할 정산액과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금전적인 손해를 "을"에게 지급하며, "을"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을"은 그 때까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지원보수와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금전적인 손해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제 11 조 ②,③에 해당하는 사유와 기타 쌍방에 귀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그 때까지 "을"이 투입한 시간 중 용역지원 보수가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할 정산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 (2) 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이해가 대립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이 제기될 경 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3) 본 계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내용은 상법, 제반 법규 및 일반적인 상관 례를 준용한다.

## 제 11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수행 중 습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절대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2 조 (효력의 발생)

- (1) 본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2005년 12월 46일

(갑) 상 호: 주식회사 아토

주 소: 경기도 시흥사 정왕 2 동 1263-1 시화공단 2 다 302 호

대표이사: 문 상 영화

(을) 상 호: 한영희계법인 대한 기계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대표이사: 오 찬 석